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505

발의연월일: 2024. 8. 1.

발 의 자:성일종·백종헌·인요한

유용원 • 박상웅 • 강선영

조배숙 • 이종배 • 고동진

박덕흠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」에 폐지지역의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2 제72호 신설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250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2. 「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